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4
----------	-----

제출년월일 : 2013. 8. .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의료원 내에 설치함

나. 지원단의 기능(안 제3조)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등 추가

다. 지원단의 조직 등(안 제4조)

- 지원단의 정원 및 인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라. 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안 제5조)

- 지원단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비용의 보조(안 제6조)

-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나. 비용추계서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인천의료원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③ 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p>□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p> <p>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p> <p>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p> <p>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li> <li>2. 관할 지역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li> <li>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li> <li>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지원단 운영비(인건비 등)

\* 붙임1. 산출기초 참조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비용보조)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0 지원단장 등 인건비 기준은 의료원 봉급규정을 적용

0 기타 운영비, 비품 구입비 등은 5인 ~ 10인 이내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비를 기준으로 책정

0 연구비는 연간 시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수주 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비 등을 예측하여 책정

나. 추계 결과

\* 붙임1. 산출기초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보조(50%) 확보 추진

\*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의료원 출연금 보조 확대(시비)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2

##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계 재 덕

[붙임1]

## 인건비 등 산출기초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247,840		(연봉하한액)
인건비	183,840	0 지원단장 : 연봉 36,000×1인 * 월 3,000×1인×12월 = 36,000 * 의사(겸임) 연봉 하한액의 50% 적용	의사 72,000 일반 57,000
		0 책임연구원 : 연봉 44,000×2인 * 월 3,660×2인×12월 = 87,840	의사 65,000 일반 44,000
		0 전임연구원 : 연봉 30,000×2인 * 월 2,500×2인×12월 = 60,000	의사 43,000 일반 30,000
사무집기 등 구입비	20,000	0 테이블, 의자, 컴퓨터 등 구입비 * 1식 × 20,000 = 20,000	사무실 집기류
연구과제 수행비	20,000	0 연구과제수행비 : 연구비의 10% * 연구비 : 2억원(2건) 적용	연구과제 2건 적용
운영비	24,000	0 운영비 : 월 2,000×12월 = 24,000	

[붙임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3년)	2차년도 (‘14년)	3차년도 (‘15년)	4차년도 (‘16년)	5차년도 (‘17년)	계
세입	세입예산		124	124	161	161	570
	소계		124	124	161	161	570
세출	운영비	98	248	248	322	322	1,238
	소계	98	248	248	322	322	1,238
재원 조달		시비 (출연금)	국시비 (50%)	국시비 (50%)	국시비 (50%)	국시비 (50%)	
국 비			124	124	161	161	570
시비	소 계	98	124	124	161	161	668
	일반회계	98	124	124	161	161	66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